

『구미시지방세채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4월 1일

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인 「회사정리법」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련법령인 「회사정리법」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